1997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8. 10. 14

다. 상 정 일 자 :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0. 19)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 규 린)

199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 2,055만 1천원으로 그중 손해배상청구소송 위탁 수수료외 10건에 17억 8,871만 6천원이 지출되고 3,183만 5천원은 불용액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비 고
예 비 비	1,820,551	1,788,716	31,835	

3. 검토보고요지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김 영 만)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예산은 세입·세출의 견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기 마련인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제도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에 의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8월에 집중 지출되었고, 재해대책 예산의 일부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액 22억 6,000만원에 비해 12.8%에 불과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2억 6,813만 6천원을 지출한 사례와 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는 '97년도 재해발생에 의한 시설복구 당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98당초예산과 추경에 계속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1억원이상의 예비비는 선승인을 받아 사용케 하는 것이 행정선례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의회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보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별회계>

청주 가경 2,3지구 미분양용지 관련 분양을 위한 재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상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공급가격을 재사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견이 없음.

4. 주요지적사항

○ 없음.

5.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 1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부. 끝.